

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로 개정 추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“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” 등 8개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, 조직 명칭 변경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
 - “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1조 중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3항 →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2항
 - “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” 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
 - “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” 제1조 중 「도로법」 제64조 및 「도로법」 제67조 → 「도로법」 제76조제2항
 - “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” 제1조 중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3조 →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1조
 - “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” 제7조제3항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 →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

- 동조례 제8조 중 “노인장애인복지과장” → “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”
- “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” 제10조제2항 중
“보건위생과장” → “보건정책과장”,
“보건의약담당” → “건강증진담당사무관”
- “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” 제15조제4항 중
“지역개발과장” → “균형개발과장”
- “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 제3
조제2항제1호의 가목
“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장 및 부위원장”
→ “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”

5. 검토의견

가. 일부개정 동기 및 필요성

- 현행 조례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등 일제 조례 정비와 관련한 인용 조문의 변경과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, 그리고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4건과 내부적 여건 변화에 의한 4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법제담당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적 소모를 최소화 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